

■ 최신 법령 ■

[상사] 개정상법상 새로운 기업형태(유한책임회사)

정철 변호사 | 이경호 변호사

1. 개정 배경

개정전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던 공동기업의 형태는 회사로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고, 조합으로서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유한책임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 분야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출자자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인적자산의 수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물적회사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상법은 사원의 유한책임과 자본조달의 용이성이라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지면서 설립·규모·운영에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합자조합에 이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성립

유한책임회사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3),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 설립에 필요한 최소 사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출자의 목적은 신용이나 노무를 제외한 금전 또는 재산만 가능하고, 설립등기 전에 출자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

3.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지분 및 기관

가. 사원 및 지분

개정상법은 유한회사 사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유한책임회사의 인적회사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성립 후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상법 제287조의23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상법 제287조의 16) 결국 사원의 가입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원의 퇴사에 관해서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나, 상법 제2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즉시 퇴사는 준용되지 않아 합명회사의 사원에 비해서는 퇴사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 전원은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으로써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87조의 7). 지분양도는 업무집행 사원의 경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사원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이 동의로 가능하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8).

나. 기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은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 감사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은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 수행하게 되는데(상법 제287조의12), 이처럼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적회사와 같이 타인기관(제3자기관)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자 또는 공

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

4. 유한책임회사의 이용 가능성

유한책임회사의 이용 가능성을 사원의 유한책임, 조세상 이점, 내적자치(정관자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 사원 전원은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상법 제287조의 7), 이는 유한회사와 동일합니다(상법 제55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은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동업기업과세특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실질이 인적회사에 가까운 유한책임회사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유한책임회사를 과세특례 대상으로 삼고, 유한회사는 현행과 같이 배제된다면 이는 유한책임회사를 이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사원총회 등의 기관의 설치 없이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지 않고 사원의 인적 능력을 고려한 잉여금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 내적자치 측면에서 그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상법」 타법개정(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시행)